##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9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이강일·한정애·김남근

박상혁 · 강준현 · 이연희

박수현 · 김용만 · 노종면

박민규 • 민병덕 • 복기왕

오기형 • 채현일 • 천준호

유종군 • 이성유 의원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또는 서명,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권, 공판정 심리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실무상 증인신문조서를 제외한 공판조서는 요약방식으로 기재되 고 있어 공판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판조서 기록 방식은 '문자'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하여 음성, 영상 등에 비해 법정에서의 상황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렵고 무 엇보다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정보화 시대에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음. 전세계적으로도 법정에서의 녹음 또는 녹화를 허용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와 행정부의 주요한 공식회의는 상당부분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공판조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재판과정이나 그 결과에 문제가 있는경우에도 즉시 바로잡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뿐임. 특히, 법정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공판조서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당사자들로부터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나아가 일선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다시 배당하거나 재판하는 등 법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따라서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판 절차의 안정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할 필요가 있음.

법정녹음이 전면 실시될 경우 재판 진행 전 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법관은 재판 한 건 한 건 집중해 처리할 수밖에 없고, 반면 법정 바깥에서의 사후적인 조서 확인 및 정서에 들이는 노력을 줄이게 해 법정에서의 재판에 중심을 두는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함.

또한, 재판의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시간적, 공간적 여지가 줄어듦과 동시에 법정 외 변론이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사후에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실현할 수 있음.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재판녹화는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함.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요 사건의 재판에 대해 재판녹화가이루어진다면 가장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대법관 지명 시 대법관 후보자의 재판 영상을 공개하는 등 법관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검사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도 있음.

이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및 제57조제4항·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를 "법원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로, "하거나"를 "하고,"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이를 명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영상녹화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 한다.

- 1. 제294조의3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 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 3.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음물 등이 재판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것 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4. 속기, 녹음, 영상녹화를 할 경우 공판심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 대할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소송기록에 첨 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다.
- ④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사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 국가기밀의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사본의 청구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무원은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녹음물의 처음과 끝에 녹음을 진행한 연월일과 소속공무소에 대한 정보를 공무원의 음성으로 녹음해 두어야 하며, 공무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류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물의 처음과 끝에 영상녹화를 진행한 연월일과 소속공무소에 대한 정보를 영상녹화해 두어야 하며, 공무 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류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2 및 제57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판정에
서 심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녹음 및 영상녹화) ① <u>법원은</u>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	<u>속기사로</u>
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u>하거나</u> 녹음	<u>하고,</u>
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	
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	
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u>하며,</u> 필요하다고	<u>한다</u> . <u>다만, 다음 각</u>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우에는 예외로 하되, 영상녹화
	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
	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한
	<u>다.</u>
<u>&lt;신 설&gt;</u>	1. 제294조의3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u>&lt;신 설&gt;</u>	2.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
	려가 있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u>&lt;신 설&gt;</u>	3.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음물

<신 설>

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 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등이 재판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속기, 녹음, 영상녹화를 할경우 공판심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 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소송기 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 부가 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속 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사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 국가기밀의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범위를 제한하는 등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속

第57條(公務員의 書類) ① ・ ② | 第57條(公務員의 書類)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기록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사본의 청구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과 같음)
  - ④ 공무원은 녹음장치를 사용 하여 녹음하는 경우 법률에 다 른 규정이 없는 한 녹음물의 처음과 끝에 녹음을 진행한 연 월일과 소속공무소에 대한 정 보를 공무원의 음성으로 녹음 해 두어야 하며, 공무원의 기명 <u>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u> 서류 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물의 처음과 끝에 상녹화를 진행한 연월일과 소 속공무소에 대한 정보를 영상 녹화해 두어야 하며, 공무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류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